\star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36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어르신정책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김현기	윤성열	이만형	03/14 박형중	
협 조				

2016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

2016. 03.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6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

2016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전담 수행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 실행으로 어르신들의 즐거운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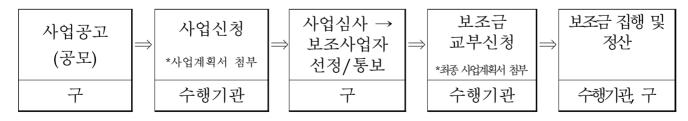
※ 어르신참여예산사업 포함

1 관련규정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제32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 제37조의6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 2016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지침(서울시)

2 사업개요

□ 사업 일반 절차



- □ 사 업 비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31,000천원(어르신참여예산 21,000천원 포함)
 - 2016 어르신주민참여예산 선정 결과 보고(어르신복지과-38810, 2015.10.23.)
 - ※ 어르신참여예산 선정현황 : 붙임1 현황 참고

□ 사업수행 기관 :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지방보조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공모절차 제외)의 규정에 따라 공모절차 제외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 된 경우
-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및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경로당 프로 그램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 전담인력 근무
 - ※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 현황

구분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수행기관	시립성북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
	경로당 내 어르신 건강,	지역사회 내 동참유도 및	경로당 실태파악, 어르신
중점내용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등	지역 내 세대간	욕구 분석, 경로당 임원
	운영	공감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
재원 시비(재배정)		시비	시비, 구비 매칭(인건비)

※ 관련 조례명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3 추 진 계 획

(1)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수행기관 ⇒ 구)

-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양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 ⇒ 총 사업비 31,000천원 범위 내 사업비 조정
 - 검토사항 :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여부, 금액 산정 착오 유무 등

(2) 프로그램 사업비 교부신청, 교부 및 집행(수행기관 ⇒ 구, 구 ⇒ 수행기관)

- 조정된 사업비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 및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교부 조건 부여)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사용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 경로당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
 - 사업 수행기관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붙임2 협약서 참고)
 - 프로그램 강사 선정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역할 수행
 - 경로당 별 수요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

(3) 경로당 프로그램 보조금 정산(수행기관, 구)

-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수행기관 ⇒ 구)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보고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구 ⇒ 수행기관)
 - 정산결과 보고에 따른 적합 유무 검토 결과 통보
 -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수행기관에 개선, 보조금 반납 등 필요조치 시행
-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의 개선사항 검토 후 다음 연도 반영

4 행정사항

□ 추진 일정

0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 접수	 2016. 03. 23. 까지
0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2016. 03. 29. 까지
0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비 교부, 수행기관 협약 체결	 2016. 03. 31. 까지
0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집행	 2016. 04. ~ 12.
0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비 정산 등	 2016. 11. ~ 12.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 활기찬 노후보장 / 노인복지 지원 / 노인복지증진 / 민간이전 / 사회복지사업 보조
- 붙임 1. 2016 어르신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 1부.
 - 2. 협약서(안) 1부.
 - 3. 지방보조금 신청 관련 서식 1부. 끝.